증평군 Jeung Pyeong

군 보

www.jp.go.kr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33호 2021년 4월 30일(금)

고 시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 2

공 고

○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 4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 6

회람									

발행 : 증평군 편집 : 문화체육과 (☎835-4133, 우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 고시 제2021-38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증 평 군 수

1. 목 적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긴급 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을 도모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내용

붙임.“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대상” 참조

※ 사업시기는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도비)확보 계획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 증평군 경제개발국 건설과

4.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21. 04. 30.

5. 문의처 : 증평군청 건설과(☎043-835-3843)

붙임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대상

시 설 명 칭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정 비 계 획	
구 분	명 칭				시 작 지 점	끝나는 지 점	연장 (m)	폭 (m)
합 계	11 개 소							
농 로	사곡3리 농로11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47	46	56	2.5
	용강2리 농로5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190-1	188-8	231	3
	용강2리 농로6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202	산66-24	36	2.5
	남하4리 농로4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677	639-2	134	2.5
	화성1리 농로2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485	522-5	156	3
	도당3리 농로10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187-4	574-1	366	3
소 교 량	화성리 소교량1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552	-	14	1
	광덕리 소교량1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05-5	-	10	0.8
낙 차 공	남차리 낙차공1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67-1	-	2.5	-
	남차리 낙차공2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67-1	-	3.0	-
취 입 보	남차리 취입보1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703	-	3.7	-

증평군 공고 제2021-416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증 평 군 수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증평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증평군 행정과(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043-835-321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평군 공고 제2021 - 463호

증평군 고시 제2018-87호(2018.11.0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증 평 군 수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위치 :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증평군 청사 증축사업
3. 사업의 규모

구분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공공 청사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일원	12,623.2			충북고시 제137호 (1994.12.01.)	
시행	공공 청사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일원	12,085.2	3,228.59	9,539.9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성 명 : 증평군수 홍성열
5. 사업기간 : 2018. 11. 09. ~ 2020. 12. 31.
6. 공사완료일 : 2020. 05. 21.